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등에 따라 결정된 2025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반영

2. 주요내용

2025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다음과 같이 함.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	82.2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및 정신병원	82.5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94.1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9.1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102.4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74.6원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102.1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96.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0조 내지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24. 11. 11. ~ 11. 25.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1호, 2023.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	82.2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및 정신병원	82.5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94.1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9.1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102.4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74.6원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102.1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96.0원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p>	<p>< 현행과 같음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유형별 분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점수당 단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료법」 제3 조제2항제3 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u>병원, 요양 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u></td> <td style="text-align: center;"><u>81.2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료법」 제3 조제2항제1 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u>93.6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u>96.0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u>98.8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료법」 제3 조제2항제2 호에 따른 조산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u>158.7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td> <td style="text-align: center;"><u>99.3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td> <td style="text-align: center;"><u>93.5원</u></td> </tr> </tbody> </table>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 제3 조제2항제3 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u>병원, 요양 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u>	<u>81.2원</u>	「의료법」 제3 조제2항제1 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u>93.6원</u>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u>96.0원</u>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u>98.8원</u>	「의료법」 제3 조제2항제2 호에 따른 조산원	<u>158.7원</u>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u>99.3원</u>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u>93.5원</u>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유형별 분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점수당 단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u>병원 및 종합병원</u></td> <td style="text-align: center;"><u>82.2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u>요양병원</u> (단, 「장애인복지법」 제58 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및 정신병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u>82.5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u>94.1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u>99.1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u>102.4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u>174.6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td> <td style="text-align: center;"><u>102.1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td> <td style="text-align: center;"><u>96.0원</u></td> </tr> </tbody> </table>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u>병원 및 종합병원</u>	<u>82.2원</u>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u>요양병원</u> (단, 「장애인복지법」 제58 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및 정신병원	<u>82.5원</u>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u>94.1원</u>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u>99.1원</u>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u>102.4원</u>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u>174.6원</u>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u>102.1원</u>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u>96.0원</u>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 제3 조제2항제3 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u>병원, 요양 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u>	<u>81.2원</u>																																		
「의료법」 제3 조제2항제1 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u>93.6원</u>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u>96.0원</u>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u>98.8원</u>																																		
「의료법」 제3 조제2항제2 호에 따른 조산원	<u>158.7원</u>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u>99.3원</u>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u>93.5원</u>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u>병원 및 종합병원</u>	<u>82.2원</u>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u>요양병원</u> (단, 「장애인복지법」 제58 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및 정신병원	<u>82.5원</u>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u>94.1원</u>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u>99.1원</u>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u>102.4원</u>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u>174.6원</u>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u>102.1원</u>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u>96.0원</u>																																		